



Barriome제어 혁신신약개발 미래인재양성
교육연구팀 자체운영규정(안)



2024.08.21. 제정

제1조 (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)

- ① 교육연구팀장은 매 학기 참여교수별 석사와 박사 학생 수를 기준으로 70%의 지원 학생 수를 할당하여 각 교수에게 알려주고 각 교수는 각자의 평가 기준에 의거 그 학기 참여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연구단에 알린다.
- ② 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(TOEFL, TOEIC, TEPS 등)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③ 장학금 지원 기간은 최소 1학기 이상이며, 휴학, 자퇴, 학기 중 취업, 연구실적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팀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장이 필요로 할 때 연구실적, 졸업 후 취업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
제2조 (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)

- ① (참여교수의 선정)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한 참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, 교육연구단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교수를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(참여교수의 증원 및 교체) 교육연구팀장이 사업 목표 달성에 있어 참여교수의 교체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제3조의 교수 실적 평가 지표가 타 교수보다 현격히 낮은 경우 교육연구팀장 또는 참여교수 1/3의 권고 때문에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 또한, 교육연구단 교육 및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전공의 신임 교수 중 본인이 희망하고 교육연구단장 또는 참여교수 1/3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참여교수로 영입할 수 있다.

제3조 (참여교수에 대한 연구업적평가 및 성과급지급 기준)

- ① 참여교수 실적을 논문 50%, 기술사업화 (연구비, 특허, 기술이전) 30%, 및 봉사 20%의 비율로 정량 평가한다. 단, 상기 비율은 4단계 BK21 평가 지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 논문 평가는 SCI(E) 논문을 평가하고 JCR 영향도에 따라, 교신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정량 평가한다.

구분		가중치
주저자	JCR상위 10%이내	2배
	JCR상위 10%초과~20%이내	1배
	JCR상위 20%초과	0.5배
참여저자	JCR상위 10%이내	0.5배
	JCR상위 10%초과	0.2배

② 교육연구단장은 특출한 성과를 도출한 참여 교수에게 전체 성과급 예산의 20% 이내에서 사업 기간 중 무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나머지 성과급은 1년에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서 ① 항의 정량 평가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.

제4조(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)

① 매학기 말 우수성과 창출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부여한다 (특허등록(국내외 구분), 논문의 JCR 영향도 및 참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).

구분		편/건당 지급액
논문	JCR상위 10%이내	500,000 원
	JCR상위 10%초과~20%이내	300,000 원
특허 등록	해외	500,000 원
	국내	300,000 원

② 교육연구단장은 특출한 성과를 도출한 참여 학생이나 교육연구단의 활동에 기여한 학생에게 학생 전체 성과급 예산의 10% 이내에서 사업 기간 중 무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 인력, 행정 전담 인력 활용 지침)

① 신진연구인력 (박사후과정, 연구교수), 산학협력 전담 인력, 또는 행정 전담 인력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에 따라 임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.

② 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최대 4년까지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③ 신진연구인력은 논문 및 특허등록, 교육연구단 전담 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 인력의 경우 교육연구단의 기여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성과급은 1년에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서 지급한다.

④ (재임용 및 계약해지 원칙)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실적에 근거하여 재임용을 심사하며 부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⑤ (기타) 신진연구인력은 교육·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장 및 대학의 승인하에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 및 다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6조 (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, 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)

- ①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운영한다.
- ② 국제학술회의 발표 지원금은 매년 교수별로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. 국제학회 참가를 위한 해외 출장의 경우 항공료 및 여비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에 따라 지원한다. 신진연구인력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포스터발표 이상의 참여를 권장한다.
- ③ 국제학술대회 단순 참가 목적으로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은 출장 후 상세 보고서를 별도로 교육연구팀에 제출해야 한다.
- ④ 장기/중기/단기 해외연수 대상자는 매 학기 초기에 교수별로 지원자를 받고, 예산 범위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상기 3조 교수평가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성과 지표에 따라 선발한다.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며, 지원 규모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에 따라 지원한다.
- ⑤ 해외학자 초빙 지원금은 초빙 교수의 저명도, 근무지, 및 교육연구단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서 참여교수의 추천에 따라 교육연구팀장이 정한다.

제7조 (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)

- ① 교육연구팀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활동 및 운영을 위해 예산/교육/연구/산학협력 분야 책임 참여교수로 구성된 4인 이상의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②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는 상기 제1조~7조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는 상기 제1조~7조항에 없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여 결정하는데,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운영 지침 및 아주대학교 지침을 따른다.
- ④ (자체평가)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 평가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